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68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황운하 · 김재원 · 박은정
용혜인 · 김준형 · 윤종오
이훈기 · 정춘생 · 차규근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마.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바.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投票人名簿”를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로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투표권)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國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の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の 長”이라 한다)은”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제91조의3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區·市·邑·面の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區·市·邑·面の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區·市·邑·面の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區·市·邑·面の 長”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邑·面에”를 “군에”로 한다.

제16조(명부열람)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제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18日”을 “30일”로 한다.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

· 시 · 읍 · 면의 장”을 “구 · 시 · 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구 · 시 · 읍 · 면의 장”을 “구 · 시 · 군의 장”으로, “구 · 시 · 읍 · 면”을 “구 · 시 · 군”으로 한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제9장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본다.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投票人の 定義) 이 法에서 "投票人"이라 함은 投票權이 있는 者로서 投票人名簿에 登 載된 者를 말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 ----- -----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 -----.
第7條(投票權) 19세 이상의 國民 은 投票權이 있다.	제7조(투표권) 18세 ----- -----.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國 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 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 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 다)·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 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 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 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の 長"이라 한 다)은 國民投票日公告日 현재 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 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 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 ·군"이라 한다)의 장은 -----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 표권자(제91조의3에 따라 확정 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

다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 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第15條(名簿作成의 監督) ① (생략)

② 區·市·邑·面の 長과 投票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任免된 때에는 당해 區·市·邑·面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區·市·邑·面의 長이 事故로 인하여 다른 者가 그 職務를 代理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投票人名簿의 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과 投票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任免權者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또는 特別市·廣域市·道選舉管理委員會(이하 "市·道選舉管理委員會"라 한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시·군의 장-----

-----구·시·
군의 장-----

-----구·시·군의 장-----

-----.

③ -----
-구·시·군의 장-----

다)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 區·市·邑·面의 長과 投票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正當한 이유없이 投票人名簿作成에 관하여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指示·命令 또는 是正要求에 不應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는 任免權者에게 그 替任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第16條(名簿閱覽) ① 區·市·邑·面의 長은 投票人名簿作成滿了日의 다음 날로부터 3日間 場所를 정하여 投票人名簿를 閱覽하게 하여야 하며, 投票權者의 편의를 위하여 閱覽期間中 區·市에 있어서는 統別, 邑·面에 있어서는 里別의 投票人名簿謄本을 統·里의 長이 지정하는 場所에 비치하여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④ 구·시·군의 장-----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명부열람) ① 구·시·군의 장-----

-----.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7條(異議申請) ① 投票權者는

누구든지 投票人名簿에 漏落·
誤記 또는 資格이 없는 投票人
이 登載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閱覽期間내에 口述 또
는 書面으로 당해 區·市·邑
·面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하
여 그 修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② 區·市·邑·面의 長이 第1
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日
이내에 審査·決定하되 異議가
정당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
시 投票人名簿를 修正하고 申
請人·관계인과 管轄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
니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
을 申請人·관계인과 管轄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18條(異議決定에 대한 不服申
請) ① (생략)

②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
員會가 第1項의 再審査要求를 받
은 때에는 2日 이내에 審査·
決定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

제17조(이의신청) ① -----

-----구·시·군의
장-----
-----.

② 구·시·군의 장-----

-----.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
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
하여 投票人名簿를 修正하게
하고 즉시 申請人과 관계인에
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관계
인과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20條(投票人名簿의 再作成) ①

天災·地變 기타의 事故로 인
하여 필요한 때에는 區·市·
邑·面의 長은 다시 投票人名
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한 投票人名簿謄本이 있는
때에는 投票人名簿를 다시 작
성하지 아니하고 그 投票人名
簿謄本에 의한다.

② (생략)

第21條(名簿寫本の 교부) ① 區·

市·邑·面의 長은 國民投票日
公告日 현재 國會에 交渉團體
를 구성한 政黨(이하 "政黨"이
라 한다)의 申請이 있는 때에

-----구·시
·군의 장-----

-----구·
시·군의 장-----
-----.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①

-----구·시·군
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

시·군의 장-----

는 확정된 投票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 1通을 그 名簿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人名簿寫本 및 不在者申告人名簿寫本の 交付申請은 投票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確定日前일까지 당해 區·市·
郡·面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第49條(國民投票日의 公告) 大統領은 늦어도 國民投票日前 18日까지 國民投票日과 國民投票案을 동시에 公告하여야 한다.

<신설>

-----.

② -----

-----구·시·군의 장-----.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
----- 30
일-----

--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

第56條(投票通知票交付) ① 區・

市・邑・面の 長은 投票通知票
를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投票
人(投票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세대주・가족・同居人の 順으
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
에게 投票日전 2日까지 교부하
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區・市・邑・面の 長과 投
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通
知票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邑・面の 區域안에 居
住하는 投票權者중에서 政黨이
指名하는 者(이하 "投票通知票
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人
씩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 없
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략)

<신 설>

<신 설>

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① 구・

시・군의 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시・군의 장-----

-----구・

시・군-----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

회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본다.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	--

<신 설>

<신 설>

적용한다.